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1
----------	-----

제출년월일 : 2019. 0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병해충이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급과 유통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과 방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안 제3조)
- 나.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운영, 임무(안 제4조 ~ 제6조)
- 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채용(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에 112백만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5. 1. ~ 2019. 5.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5319, '19. 4. 25.)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5319, '19. 4. 25.)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29423, '19. 4. 23.)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평창군 농작물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真菌) · 점균(粘菌) · 세균(細菌) ·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제3조(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 2개 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반장

가. 예찰·방제반: 기술지원과장

나. 행정지원반: 농축산과장

3. 각 반은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나.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② 예찰·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真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

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42조(명예 식물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물 검역 질서를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 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에 대한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 식물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임무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제목개정 2011. 7. 14.]

[붙임 2]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9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
-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을 채용·운용하여 병해충 사전예찰·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

나. 추계 결과(연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112,060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원(도비)	예찰방제 차량 및 장비 구입 예찰방제단 운영비 및 인건비(3명)	100,000	
병해충예찰단 운영 인건비(군비)	예찰방제 기간제근로자 운영(1명)	12,060	

다. 재원조달 방안 : 2019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연락처	(033) 330 - 13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12,060	80,000	80,000	80,000	80,000	432,060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지원(도비)		1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300,000
병해충 예찰단 운영 인건비(군비)		12,060	30,000	30,000	30,000	30,000	132,060
재원 조달		112,060	80,000	80,000	80,000	80,000	432,060
의존 재원	소 계	30,000	15,000	15,000	15,000	15,000	90,000
	보조금	30,000	15,000	15,000	15,000	15,000	9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2,060	65,000	65,000	65,000	65,000	342,06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82,060	65,000	65,000	65,000	65,000	342,06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